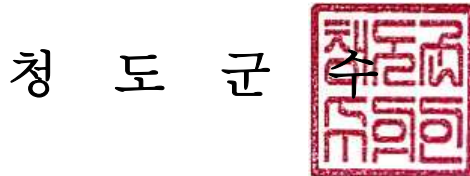


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[등록취소] 공시송달 공고

「약사법」 제44조의2(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)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의3(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)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일



- 제 목 :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 공시송달 공고
-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업종명	업소명 (대표자)	영업장 주소	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	예정된 처분내용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	롯데슈퍼청도금천가맹점 (서*환)	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83	등록기준 미달 (등록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)	등록취소

- 공고기간 : 2023. 11. 2. ~ 11. 16. (15일간)
- 처분근거 : 「약사법」 제76조의3 적용
-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등록취소
- 고지사항

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,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, 사건 진행상황 열람, 재결서 송달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- 문 의 처 : 청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(☎054-370-2645)